

6. 정보보호대학원 장학금 지급세칙

제 1조 (목적) 이 세칙은 고려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함)의 정보보호대학원(이하 “본 대학원”이라 함)의 장학생 선정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 (적용범위) 본 대학원의 장학생 선정과 장학금의 지급은 법령 또는 장학금을 지급하는 개인 및 교외장학기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이 세칙에 의한다.

제 3조 (지급자 및 수혜금액) 각종 장학금의 수급자수와 금액은 총장이 정한다.

제 4조 (지급대상 등) ① 교내외 각종 장학금의 지급대상은 당해학기 본 대학원 재학생으로 한다. 다만, 제 2조의 기관(단체, 개인 등)에서 지급대상을 따로 정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.

② 전 향의 지급대상은 장학금을 2종으로 수혜할 수 없다. 다만, 2단계 BK21장학금은 다른 장학금과 이중수혜를 허용한다.

제 5조 (종류) 본 대학원의 장학금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일반장학금
2. 조교장학금
3. 기타 근로장학금
4. 5학기이상 학비감면
5. 교외장학금

제 6조 (일반장학금) ① 석사과정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주임교수의 추천으로 대학원장이 장학금을 지급한다.

1. 직전학기에 6학점이상(연구지도 교과목 제외) 이수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
2. 가사사정 등 특별한 사유로 지도교수나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

제 7조 (조교장학금) ① 전학기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조교임용 규정에 의해 조교로 임용된 학생 및 이에 준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조교장학금을 지급

할 수 있다.

② 이 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액은 조교임용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 8조 (기타 근로장학금) ①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행정실에서 행정보조로 근무하는 자에게는 근로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장학금의 재원은 본 대학원 성과예산에서 충당한다.

제 9조 (5학기 이상 학비 감면) 소정의 교과 또는 연구지도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5학기이상 등록하는 학생은 신청 학점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수업료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다.

1. 연구지도학점 신청 학생은 당해 수업료의 3분의 2 감면

2. 교과학점을 1-3학점 신청 학생은 당해 수업료의 2분의 1 감면

3. 교과학점을 4-5학점 신청 학생은 당해 수업료의 3분의 1 감면

제 10조 (복지 장학금) ① 본교 재직중인 총장발령 교직원(명예교수, 계약직원, 촉탁직원포함)과 법인 임직원의 직계 비속이 대학원에 재학하고 있는 경우에 학비를 감면한다.

② 이 학비감면의 지급액,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학비보조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 11조 (교외장학금) ① 교외 장학금이란 교외기관 및 교외인사가 본 대학원의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을 말한다.

② 제1항의 교외기관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장학단체

2. 국가기관 및 그 산하 단체

3. 일반기업체

4. 기타 각종 기관

③ 교외 장학금의 신청, 제출서류, 선발방법, 지급인원, 지급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교외기관 및 교외인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 12조 (준용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장학금 급여규정을 준용 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이 세칙 시행전에 지급된 장학금은 이 세칙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이 개정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4조 제2항의 2단계BK21 장학금 이중수혜 허용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(대학원 명칭변경에 따라 규정명칭을 ‘정보경영공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지급세칙’에서 ‘정보보호대학원 장학금 지급 세칙’으로 변경함)

부 칙

이 개정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 (제 5조(종류) 개정, 제 6조 (외국인장학금) 삭제, 제 11조 (공무원 학비감면) 삭제)